제966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1.건축구조기준 세분류 신설 · 강화(신설) ㅇ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00) 개정 – 건축물 무량판 구조 설계 시 철근 상세 등 특별 고려사항을 신설, 철근보강 기준 등을 강화 ㅇ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10) 신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통 설계기준(KDS 14 20 00)에 근거하여 건축물 설계에 필요한 구조내력 산정, 철근 상세, 후시공 앵커 설계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보, 슬래브, 기둥, 벽체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부재 각각에 대하여 제작–조립–완공단계별 설계 방법을 규정 –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 전달에 관한 해석방법,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방법과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법을 규정 – 특히,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이 중 높은 연성도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등을 정하는 한편, 조립된 프리캐스트 콘크리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트 바닥판의 일체 거동(격막)의 횡하중을 지지능력을 설계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 ▶건축법 제48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건축구조기준 전체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주민 등의 의견 청취(신설) ㅇ 주요 사업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재청취 기준 설정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규정한 법 제17조제2항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 – 재청취 신청할 때는 신청 사유과 근거 자료, 신청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7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2.협의의견 관리 의무(신설) ㅇ 협의의견 관리대장의 세부 작성내용 및 비치 장소의 구체화 – 사업의 개요, 협의내용 이행계획, 협의내용 이행현황 등을 관리대장에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함 ㅇ 협의의견 관리담당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구체화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7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3.사업수행능력 평가(신설)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대상사업의 범위와 예외적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절차를 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4.평가대행업 등록기준 및 행정제재(강화) ㅇ 등록기준 설정 및 위반 시 행정제재 방안 마련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의 등록기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 - 행정처분한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ㅇ 거짓 또는 부실 평가서 판단기준 마련 - 평가서등과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35조제38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4조제27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5.해양이용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설) ㅇ 재대행 승인 신청 절차 및 기준 마련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자가 업무를 재대행하려는 경우 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ㅇ 재대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평가대행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로 설정 – 해양물리, 수질, 퇴적물, 해양생태계 분야, 위해요인 조사·분석, 해수유동 모델링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6.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신설)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및 취소 사유 명확화 – 교육 인력·시설·설비, 교육과정 및 내용, 운영경비 조달 계획 등의 지정기준 제시 – 지정 취소 및 업무정치 처분 기준 제시 – 지정서의 발급, 지정 및 취소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의 게시 등 절차적 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4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강화) ㅇ 기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63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이외에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설치를 평가 대상으로 추가 – 폐기물을 고립처분하는 사업,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소)수력, 해양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면적 10만㎡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300m 이상의 외곽시설 설치 사업을 추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2.주민 등의 의견 청취(강화) ㅇ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결과 공개, 이해관계자 의견의 반영 여부 게시 등 공정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 – 공청회 개최 사유,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 – 사업규모의 변경, 사업지역의 확대 시 주민등 의견을 재청취할 수 있도록 절차 제도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6조,제17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평가대행자 선정의무(신설) o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를 작성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평가대행자를 달리하도록 규정 – 공유수면 매립 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o 평가대행자 선정사업 중 해양환경영향이 중대한 사업의 경우 평가대행자 선정을 선정기관에서 추진하도록 규정 – 바다골재채취사업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유수면 설치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제32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제22조 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신설) o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마련 – 인력, 시설, 설비, 운영계획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4조 5.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신설) o고유식별정보의 처리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일부 업무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0조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신설) ㅇ제7조의2(조건부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 다음 각 호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1.원상회복충당금 2.특별수당 3.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조의2	1.비중요
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자료제출 기관 및 실태조사의 범위(신설) ㅇ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관 지정 ㅇ 실태조사의 대상, 주기, 내용, 방법 등을 정함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4조,제5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신설)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7조,제8조,제9조 3.협회의 인가 및 감독(신설) ㅇ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기준 마련 ㅇ 협회 설립을 위한 인가절차 기준 마련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협회 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준 마련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8조,제19조제20조	
6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조달청)	1.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외 물품 무상제공시 거래정지 도입(신설)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외 물품을 납품한 것을 적발한 경우 1차 1개월 2차 3개월 거래정지* *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7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 규칙(강화) □ 마이데이터 정보 제3자 판매시 보안 강화(제23조의3 제1항제13호) ○ 마이데이터 정보 활용의 보안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 정보 제공시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안전성·신뢰성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이용토록 의무화**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3자에 정보 제공시 이용하는 화면 마스팅, 데이터 반출 통제 기능 등이 적용된 가상 데스크톱 환경 ** 대환대출, 신용정보올리기 등 정보주체의 직접 요청에 따른 서비스로서 정보주체에 명백히 이익이 되며, 동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 □ 마이데이터서비스 대면영업 허용(제23조의3제2항제5호)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 채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규정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정보조회, 활용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8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 마련(신설) ㅇ가상자산사업자를 ①별도 영역으로 분리하여, ②영업수익 기준으로 감독분담금 산정·부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1.비중요
9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요건 및 시험항목 추가(강화) ㅇ 강화된 국제기준(UN/ECE/R44→R129)도입 등 안전기준 개정 추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	1.비중요
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자동차제작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신설) ㅇ 자동차제작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구동축전지 및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2.자동차 제원표에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강화) ㅇ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해야하는 자동차제원표에 구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동축전지 셀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11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인증재료의 생산 · 유지관리 기준(신설) ㅇ 무병화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종의 진위성이 확보되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생산관리된 무병재료(접수, 대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묘목이어야 함 ㅇ 무병재료(접수, 대목) 생산을 위하여 등록 관리되는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는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생산되어야 하며,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생산 ·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6조	1.비중요
12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한 표시 부착(신설) ㅇ 훈증제로 훈증소독 하는 과정에서 폭발, 화재사고, 중독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인화성 가스(화기엄금)” 위험표시 및 유해가스 주의표시를 피훈증물 내외부에 부착하도록 함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5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3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자동차 등록(강화) ㅇ 매매업자가 알선하여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1.비중요
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1.서비스 중단 사실 등 고지 의무 강화(강화) ㅇ (개선안) 부가통신역무 중단 사실 고지 의무 대상을 2시간 이상의 무료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는 현행과 같이 미고지 - 고지방식도 기존 3개(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앱 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3	1.비중요
15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1.보수교육 신설(강화) ㅇ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6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자가용전기설비 전력거래 허용 비율 축소(강화) ㅇ 자가용전기설비의 외부거래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1.비중요
17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1.공동주택 냉방평가 의무화(강화) ㅇ ZEB 인증 시 공동주택 냉방에너지 평가 의무화(안 제4조, 별표 2)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4조	1.비중요
18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용도구역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신설) ㅇ 시정명령의 종류 ▶농지법 제42조의2▶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3	1.비중요
19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 운영 요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신설) ㅇ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는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추고 지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인증기관 지정기준 요건 조직 · 인력 및 시설 · 장비, 인증관리 문서 구축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운영 요령 제4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0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실태조사 실시 주기 및 범위(신설) ㅇ 그린바이오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 범위와 방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신설) ㅇ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고를 위한 신고서 및 서류제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전담기관의 지정대상 및 행정처분 기준(신설) ㅇ 그린바이오 전담기관 지정대상 및 행정처분 기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및 행정처분 기준(신설) ㅇ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및 행정처분 기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강화) ㅇ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등의 가입 기준 현실화) '13년 이후 변경없어 전자금융거래 확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일부 업권의 보상한도를 현실화(제5조제1항) – 금투업자 : 일괄 5억원 → 자산 2조원 이상 금투업자 10억원(안 제2호), 여전사 · 보험사 · 저축은행 : 1억원 → 2억원(제4호), 선불업 · PG 등 : 1억원 → 2억원(제7,8호) * 기타: 기존 내용 조정에 따른 호 신설 (안 제6,9,10,11,1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2.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범위 확대(강화) ㅇ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범위 확대) 신속한 업무연속성 회복 필요성 확대에 따라 현재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가 없는 중소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구축의무 부과(제23조제8항) –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여전사(제6의2호), 자체 전산을 갖춘 저축은행(제8호), 총거래액 2조원 이상의 전금업자(제1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1.비중요 2.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취소 및 사용제한 기준 설정 (신설) ㅇ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취소 및 사용제한 기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2.제공인력 자격정지 기준 설정(신설) ㅇ 제공인력 자격정지 기준 설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1.중요 2.중요
23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소방청)	1.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ㅇ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 (제4조제2호) – 전원의 색상을 명확하게 하며, 단독형의 제품의 경우 정확한 상태 파악 가능하도록 전원표시 신설 (제4조제4호, 제21호마목)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4조제22호) – 새로운 회선의 주음향 장치를 울리도록 기준 강화 (제11조제3호) – 수신부 주위온도 및 탐지부 온도시험 강화(제13조, 제21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건설현장발생가스 추가(제16조) – 전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원전압 변동시험 강화(제18조) – 습도시험 강화(제22조) – 방수시험강화 및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제29조, 제30조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제11조제13조제16조제18조제21조제22조제29조제30조의2	
24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소방청)	1.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강화) ㅇ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 시험 신설(제3조제4호나목)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16호) –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제4조제3호마목) –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제34조의2) –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8조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조,제11조,제11조의2,제28조의2,제34조,제34조의2,제38조의2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5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기상청)	1.기상예보사 감정사 면허증 반납 의무 신설(신설) ㅇ 기상예보사 · 감정사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함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1.비중요
26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환경부)	1.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강화)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 품목군 6개 품목군 신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3조,제4조	1.비중요
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보험의 기준(신설) ㅇ 맞춤형건강기능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소분 · 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및 보상규모를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2.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신설)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관리사 전문성 확보 및 소분 · 조합 관련 식품사고 발생 방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8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및 강화(강화) ㅇ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안 별표1, 별표2, 별표3)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및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 등 7종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 [별표1] 2종, [별표2] 4종, [별표3] 1종 ㅇ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안 별표1, 별표2, 별표3) – 가스마취기 및 거치형보육기 등 24종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국제규격(IEC, ISO) 적용으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 [별표1] 7종, [별표2] 16종, [별표3] 1종 ▶의료기기 기준규격 제3조	1.비중요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식품오염사고보고 대상 규정(신설) ㅇ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오염사고 발생시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4.1.2.)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제46조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의2	1.비중요